건축물현황도 열람 · 발급 위임장

<table>
<tr><td>신 청 내 용</td><td colspan="4">□ 장안구 동 번지
□ 건축물현황도 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임하는 사람(소유자)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 임 받 은 사 람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임하는 사람 : (서명 또는 인)</td></tr>
</table>

※ 이 위임장에 의하여 건축물현황도 열람 ·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증(사본)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유 의 사 항

다른 사람의 서명 도는 인장의 도용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(사문서의 위조· 변조) 내지 제237조의 2규정(복사문서등)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